제30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골 목 경 제 과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가.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은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한 소비자에게 구미사랑상품권을 환급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나. 2027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행사기간 중 다수의 가맹점과 이용자가 참여하는 만큼 환급기준 적용, 지급내역 검증, 부정 · 중복환급 방지, 실적관리 및 정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된 관리가 필요함.

다. 또한 구미사랑상품권 이용내역 확인과 지류형 상품권 환급, 행사 운영·민원 대응·상품권 수불 및 정산 등 사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일원화된 운영이 필요함.

라. 이에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수행 경험과 공공성을 갖춘 재단법인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 사무를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구미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등

다. 위탁 사무 내용

(1)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2) 구미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상인 교육, 안내 등 관리

(3) 권역별 환급소 설치와 운영, 현장 인력 배치, 민원 응대 및 안전관리

(4)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구매증빙 확인 및 환급 처리

(5) 환급관리 시스템 운영, 중복환급 및 부정환급 방지, 일일 환급실적 관리

(6) 구미사랑상품권 구입, 보관, 불출, 재고 관리 및 잔여분 관리 등

(7) 사업비 집행, 정산, 성과분석,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라. 위탁기간 : 2027. 1. 1. ~ 2029. 12. 31.까지

마.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00백만원 (2027년 기준)

구 분	금액 (백만원)	산출근거
총 계	**2,000**	
구미사랑상품권 환급금	1,600	구매금액별 환급 지급 재원
사업운영비	320	환급소 운영인력, 환급관리 시스템, 홍보물 제작, 참여점포 관리, 상품권 수불 및 보관 안전관리, 정산·성과분석 등
위탁수수료	80	공기관 위탁 수수료(4%)

※ 상기 산출내역은 의회 동의를 위한 추계안으로, 최종 세부 산출은 2027년도 예산편성 및 위·수탁 협약 체결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바.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일자리경제과-28333(2026. 9. 30.)

- 대규모 환급재원의 안전관리, 환급기준의 통일성, 환급자료 검증 및 정산 책임성 확보가 필요한 사무로서 공공위탁 방식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3. 부서의견

가. 2027년 신규로 추진하는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은 사업비 집행, 상품권 수불, 환급자료 검증, 민원 대응, 성과관리 등을 일관된 기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나.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수행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구미시의 관리감독 아래 사업을 일원화하여 추진하기에 적합함.

다. 따라서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은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여 지역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를 높이는 한편, 사업집행의 투명성과 정산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타당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3)「구미사랑상품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등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당초예산 2,000백만원(시비) 편성 예정

다.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신규 공공위탁 사무로 해당없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미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 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상품권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품권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정책수당, 인센티브, 맞춤형 복지혜택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행사의 홍보 등 참여자를 대상으로 경품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공공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사랑상품권 페이백 지원사업 운영 사무를 공공위탁함에 따라 구미사랑상품권 환급금 및 사업 운영에 필요한 위탁운영비 등 세출이 발생함.

2. 비용추계의 전제

(1) 사업비는 1년 / 시비 2,000백만원으로 하며, 국비, 도비, 민간부담금은 없는 것으로 산정함.

(2) 환급기준, 권역별 배분, 환급소 수, 운영기간 등은 세부 추진계획 수립 시 조정될 수 있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세입	해당없음(a)				
세출	○ 환급금	1,600	1,600	1,600	4,800
	○ 위탁운영비 등	400	400	400	1,200
	소계(b)	2,000	2,000	2,000	**6,000**
□ 총 비용(a-b)		-2,000	-2,000	-2,000	-6,000

4. 재원조달 방안 (백만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2,000	2,000	2,000	6,000
민 간				
기 타				
합 계	2,000	2,000	2,000	6,000

5.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는 공공위탁 동의를 위한 추계자료로, 향후 예산심의, 세부사업계획, 위·수탁 협약 및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세부 항목별 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6. 작성자 : 골목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이재희 (☎ 480-2623)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구분		금액	산출기초	비고
직접비	환급지원금	1,600,000	·구미사랑상품권 환급금	
	환급사업 개최용역	288,000	·환급소 6개소 운영(행사기간 40일, 설치·철거 4일) - 6개소 × 4인 × 44일 × 200천원 = 211,200천원 ·행사 홍보비 - 콘텐츠 제작 및 광고비 운영 1식 = 5,000천원 - 전광판, 옥외홍보물 제작 및 설치 1식 = 5,000천원 ·환급소 임차비 - 6개소 × 3,000천원 × 1.5달 = 27,000천원 ·행사 운영비 - 현장 물품 구매비 및 진행비 등 = 6,800천원 ·물품 임차비(태블릿PC, 계수기, 안내자료 등) 1식 = 33,000천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000	·환급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식	
소계ⓐ		1,898,000		
간접비	운영비	3,500	·심사수당 : 1회 × 7인 × 6시간 × 60천원 = 2,520천원 ·사무비품, 다과, 우편, 회의비 등 = 980천원	
	여비	1,000	·현장 모니터링, 민원대응을 위한 출장여비	
	전담인력 인건비	17,500	·1인 × 1,750천원 × 10개월 = 17,500천원	
	대행수수료	80,000	·사업비의 4% 정도	
소계ⓑ		102,000		
총계(ⓐ+ⓑ)		2,000,000		

소 관 부 서		골목경제과
입 안 자	과 장	박영희
	팀 장	박수경
	담 당 자	이재희 (480-2623)